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원이・위성곤・서미화

이정문・서영석・김한규

문금주 • 박지원 • 김선민

민형배 · 이해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 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않음.

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, 전문병원이 3개

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,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5).

법률 제 호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4.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
- 5.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

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의5(전문병원 지정) ① (생 | 제3조의5(전문병원 지정) ① (현 |
| 략)                  | 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    | 2                   |
|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한다.                 | <b>.</b>            |
| 1.・2. (생 략)         | 1.•2. (현행과 같음)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3.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이 없을 것</u>       |
| ③・④ (생 략)          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    | 5                   |
| 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 |                     |
|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한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략)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|

| <u>&lt;신 설&gt;</u> | 4.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령을 받은 경우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5.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, 의 |
|                    | 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되는 경우               |
| ⑥·⑦ (생 략)          | ⑥·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|